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 사 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그 종류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우리시 용역사업 총 계약 건수는 2,818건 32,024백만원으로, 이 중 45건이 1억 이상 대규모 용역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민이용과 밀접한 대규모 용역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통해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여부, 계약절차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용역사업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용역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성 검토, 용역설계 내역 및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 10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하여 ○○○○○과 외 5개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서면감사에 앞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 타 시·군 감사 사례, 시의회 논의사항 및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용역사업 집행에 관한 대상 부서 자료제출(2019. 8. 9. ~ 8. 26.)를 거쳐 2019. 9. 2.부터 동년 9. 6.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와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요약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용역사업 근무자 근태관리 개선을 위해 1건은 개선을 권고 하였고 7건에 대하여는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 및 해당 사업의 과업지시서 등에 근거하여 용역사업 추진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감사결과 처분계획

□ 처분요구내역 총괄

행정상 조치(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8	-	7	-	1

□ 처분요구목록(8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8건	주의 7 권고 1			
1	○○○○과	▣▣▣▣시설 관리용역 분할 수의계약 및 계약 전 용역수행	주 의			
2	○○○○과	▣▣▣▣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	주 의			
3	◇◇◇◇과	▣▣▣▣ 관리 용역사업 인력관리 소홀	주 의			
4	◎◎과	제한입찰 운영 부적정	주 의			
5	☆☆☆☆과	※※※※※ 청소용역 기성검사 부적정	주 의			
6	☆☆☆☆과	※※※※※ 청소용역 감독 소홀	주 의			
7	△△△△△과	◇◇터널 위탁관리용역 근태관리방안 마련 권고	권 고			
8	8개 행정복지센터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련 관리 · 감독 업무 소홀	주 의			

3.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관리용역 분할 수의계약 및 계약 전 용역수행	NO. 1
----------	--	--------------

- ○○○○과에서는 2017년 ㉠㉠㉠㉠ 관리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일사업에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 조기개장 관리용역 계약 10건을 지역별·시기별로 분할하여 발주하였으며, ◇◇·★★권역 ㉠㉠㉠㉠ 관리용역의 경우 조기개장과 일반개장을 통합발주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입찰계약을 통한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임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2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 또한, ㉠㉠㉠㉠ 조기개장 관리용역 계약 10건에 대하여 실제 용역사업 시작 일자보다 늦게 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절차를 미준수하고 임의업체에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용역수행 이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

2	제한입찰 운영 부적정	NO. 4
----------	--------------------	--------------

-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한 후 2개 항목 이상이 중복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과에서 계약 의뢰한 ◇◇◇◇◇시설 운영관리 용역에 대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면서 최근 3년간 누계금액 60,477천원 이상의 ◇◇◇◇◇시설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역과 실적을 중복 제한하여 입찰공고 한 결과,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시킨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3	※※※※※ 청소용역 감독 소홀	NO. 6
----------	-------------------------	--------------

- 「2018년 ※※※※※ 청소용역 계약서」 제9조(인력관리)에 따르면 청소원을 채용 및 교체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 10조(근무방법 및 관리감독)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근무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시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에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사단법인 ♡♡♡♡♡회와 계약한 5권역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청소원이 A, B였으나 2018. 3. 1.부터 B에서 C로 교체되었는데도 3월 ~ 12월분 기성검사 시 별도 조치없이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2017년 ~ 2018년도 용역변경 총 0건에 대하여 용역근로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 및 용역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청소원을 채용 및 교체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주의” 조치